

의사 국가시험 종합안내서
2023년도 제87회(필기)
2024년도 제88회(실기)

2022. 10.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 차

1. 시험개요	1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2
<input type="checkbox"/>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2
<input type="checkbox"/> 응시원서 접수안내	4
<input type="checkbox"/> 응시수수료 감면 및 취소 신청	8
3. 출제정보	10
<input type="checkbox"/> 실기시험	10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13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예시문항	15
4. 시험시행	16
<input type="checkbox"/> 실기시험	16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20
5. 합격자발표	25
6. 면허증 발급	26
7. 기타	30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발급 안내	30
<input type="checkbox"/> 답안카드 열람 안내	31
<input type="checkbox"/> 응시확인서 안내	31
<input type="checkbox"/>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32
<input type="checkbox"/> 의사 국가시험 분석결과	32
8. 자주하는 질문(FAQ)	33

1. 시험개요

□ 의사 국가시험

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개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자로 결정

구분		필기시험(제87회)	실기시험(제88회)*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인터넷접수 2022.10.4.(화)09:00~10.11.(화) 18:00	•인터넷접수 2023. 7.(예정)
	응시 수수료	•287,000원	•추후공지
	장소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메뉴 ※ 단, 의사 국가시험 면제시험 포기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 하여 면제 포기각서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함(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험장 공고일	2022.12.2.(금)	-	
시험장 선택기간	2022.12.2.(금)~6.(화)		
응시표 출력기간	2022.12.9.(금)~시험일	2023. 8.~응시자별 시험일	
시험시행	일시	2023.1.5.(목)~6.(금)	2023. 9.~ (예정)
	장소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제주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 [직 종선택] - [시험장소]	국시원 본관(청사 내 의사실기시험센터)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음	응시표, 신분증, 가운, 청진기, 펜라이트
합격자 발표*	일시	2023. 1. 18. (수) 예정*	2023. 11월 말 예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합격자조회]메뉴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 통보	

* 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를 분리해서 시행하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

* 실기시험 : 2023년도 제87회 하반기(2022년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기준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52호, 2012.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규정하며 결격사유는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응시자격: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1152호, 2012.2.1.) 제2조

- (1)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2020. 2. 28. 시행)

※의료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에 따라 94.7.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2) 「의료법」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격사유 등: 「의료법」 제8조, 제10조

- (1)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대상자

의사 국가시험 면제시험 포기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절차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입력사항(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 회원가입: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응시원서 수정, 응시표 출력,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

- 실명인증

- 실명인증
 -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②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주)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에 문의
- 원서접수 내용은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응시원서 접수: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

■ 입력사항: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졸업학교(학과), 졸업(예정)일자, 응시지역

※ 주소: 실제 거주지를 입력하여도 관계없습니다.

※ 사진파일 등록: 등록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 사용됩니다.

- 사진준비

■ 사진

①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② jpg, bmp, png 포맷

③ 276*354 픽셀 이상 크기

④ 해상도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감면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2022년 11월 24일까지: <http://www.tosspayments.com> - [결제내역확인]

■ 2022년 11월 25일 이후: <http://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원서관리] - [응시원서선택]
- [응시원서수정] 메뉴
- 수정 가능 기간 및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선택]-
[응시표출력]
- 기간: 응시표 출력가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방문접수



방문 접수 대상자

의사 국가시험 면제시험 포기자 (지난 회차의 합격한 시험의 면제를 포기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 (국시원에서 배부)'를 작성한 후 원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본인이 필히 방문

※ 그 외의 경우 인터넷 접수만 가능(단, 국시원 별관에 방문하여 민원PC로 인터넷 접수 가능)

방문 접수처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중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응시원서 사진 관련 유의사항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감면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 응시취소 신청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후에 신청

방문, 우편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팩스 : 02-2251-6329

이메일 : call@kuksiwon.or.kr

제출서류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응시취소 및 환불 신청서 접수 마감 기준

인터넷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방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팩스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이메일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 환불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환불금액	번호	환불 사유	신청기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의 100%	1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후 7일까지	-
	2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시험일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3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4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5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 시)
	6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7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안내
	8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응시수수료의 5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p>※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p> <p>※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 까지로 한다.</p> <p>※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출제정보

□ 실기시험 [2023년도 제87회 하반기(2022년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기준] 출제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출제문제수	배점		시험시간(1문제당)
		1문제당	만점	
종합문항	10문제	100점	1,000점	12분

문항유형 및 평가내용

문항유형	평가내용
종합문항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항목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항목이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48개 임상표현과 9개 기본진료술기로 구성되어 있음.

<임상표현>

항 목 명	
1. 가슴통증	2. 가정 폭력/성폭력
3. 객혈	4. 경련
5. 고혈압	6. 관절 통증/부기
7. 구토	8. 근력/감각 이상
9. 기분 변화	10. 기억력 저하
11. 기침	12. 나쁜 소식 전하기
13. 두근거림	14. 두통
15. 떨림/운동이상	16. 목통증/허리통증
17. 물질오남용	18. 발열
19. 배뇨 이상	20. 배변이상(변비/설사)
21. 복통	22. 불안
23. 붉은색 소변	24. 산전 진찰

25. 성장/발달 지연	26. 소변량 변화(다뇨증/핍뇨)
27. 소화불량	28. 수면장애
29. 쉽게 멍이 듦	30. 실신
31. 어지럼	32. 예방접종
33. 월경이상/월경통	34. 유방통/유방덩이
35. 음주 문제/금연 상담	36. 의식장애
37. 이상지질혈증	38. 자살
39. 질 분비물/질 출혈	40. 체중 감소
41. 체중 증가/비만	42. 콧물/코막힘
43. 토혈	44. 피로
45. 피부발진	46. 혈변
47. 호흡곤란	48. 황달

<기본진료술기>

항 목 명	
응급 처치	기본 심폐소생법 심장전기충격요법 기관삽관법
상처관리	상처드레싱(상처소독)/화상드레싱 국소마취 봉합술
채혈 및 혈관확보	정맥주사/안전수혈술기 정맥혈 채혈/혈액배양을 위한 채혈 동맥혈 채혈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차진료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minimal core competency)’을 임상 표현별로 수행과정 중심으로 기술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목표집 \(2020\) \(링크\)](#)

의사 실기시험 환자의사관계(PPI) 채점 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내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물어보고 잘 들어주었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개방형/폐쇄형 질문, 호응, 대답 여유, 확인, 쉬운 용어, 분리 질문, 경청 자세, 면담주제 협상				
나의 생각과 배경을 효과적으로 알아냈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생각/걱정 질문, 기분/정서 표현 격려, 나의 기대 파악, 일상생활 영향 파악, 나의 입장/배경/처지 등에 관심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쉬운 용어, 필요한 정보, 내 의견과 선택권 고려, 기억하기 쉽게 설명, 이해 점검 및 질문 기회, 근거 있는 설명				
나와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편하게 시작, 공감과지지, 무비판적 수용, 진정성/솔직함, 편안한 분위기, 신뢰, 자신감, 존중				
면감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냈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논리/체계적 순서, 적절한 시간 배분, 주기적 요약/면담 방향 제시, 내 생각에 따라 질문 이어가기				
신체진찰 태도가 좋았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손 위생, 사전 설명, 가려주기, 환자안전과 불편함 배려				

□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

시험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제1일	1	1. 보건의약관계법규(20)	08:30	09:00~10:45 (105분)	1점
		2. 의학총론(60)		10:45~10:50 (5분)	
	※ 답안전송 확인				
	2	1. 의학각론1(80)	11:10	11:20~13:05 (105분)	
2. 의학각론2(80)		13:05~13:10 (5분)			
※ 답안전송 확인					
제2일	3	1. 의학각론2(80)	08:30	09:00~10:45 (105분)	1점
		2. 의학각론3(80)		10:45~10:50 (5분)	
	※ 답안전송 확인				
	4	1. 의학각론3(80)	11:10	11:20~13:05 (105분)	
2. 의학각론4(80)		13:05~13:10 (5분)			
※ 답안전송 확인					

시험과목 및 문제형식

시험과목	문제수(총점)	문제형식
<p>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p> <p>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 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p> <p>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p>	320문제(32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평가목표

필기시험 평가목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충실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의사 직무상황(physician encounter, PE)’을 중심으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역량(minimum competence)을 기술.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14년에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 제82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

[의사 국가시험 \[필기\] 평가목표집\(링크\)](#)

□ 필기시험 예시문항

1. 임신 38주인 28세 미분만부가 3,600 g 남아를 흡입분만하였다. 2시간 후 신생아의 오른쪽 두피에 부종이 관찰되었고,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 오른쪽 마루뼈(parietal bone)와 뼈막 사이에 혈종이 보였다. 진단은?

- ① 산류(caput succedaneum)
- ② 머리혈종(cephalhematoma)
- ③ 경질막바깥혈종(epidural hematoma)
- ④ 거미막밑혈종(subarachnoid hematoma)
- ⑤ 머리덮개혈관종(scalp hemangi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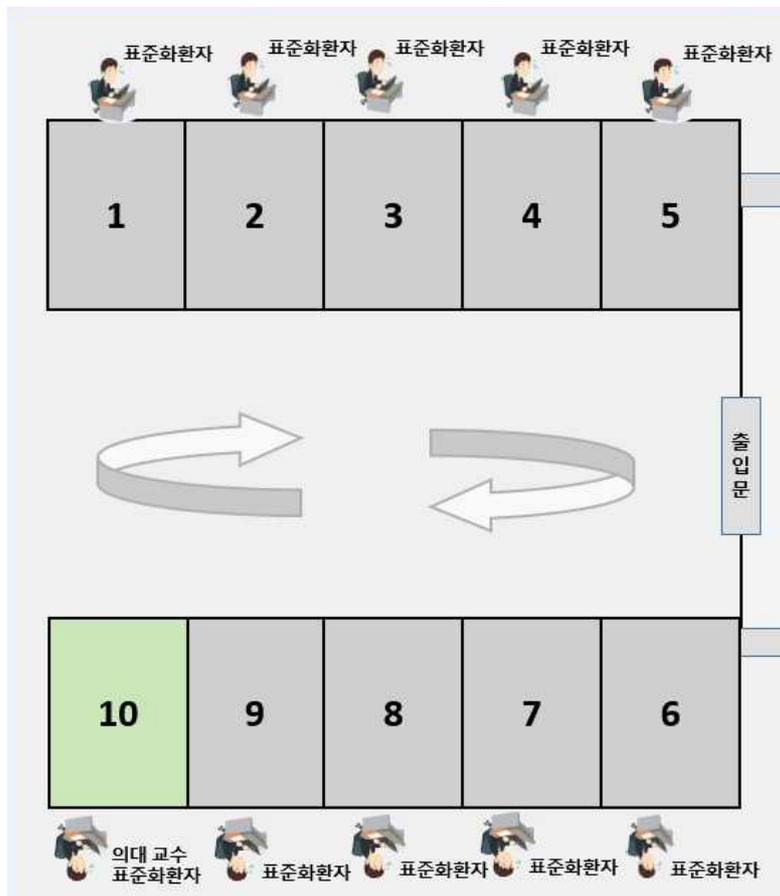
2. 21세 여자가 어제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게 되어 병원에 왔다. 1년 전 오른쪽 눈이 일주일 동안 잘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손이 한 달간 저린 적이 있었다. 안저검사에서 오른쪽 시신경 위축이 관찰되었다. 양측 하지 근력은 2등급(grade II), 깊은힘줄반사는 (+++/+++) 이었고, 양발에서 바빈스키 징후가 관찰되었다. 감각검사에서 배꼽 이하로 통각 및 진동각이 감소되었다. 진단은?

- ① 다발경화증
- ② 선천근육퇴행위축(congenital muscular dystrophy)
- ③ 중증근무력증
- ④ 길랭-바레증후군
- ⑤ 근육위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4. 시험시행

□ 실기시험 [2023년도 제87회 하반기(2022년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기준 시험방법

-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준비물을 지참하고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입장해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 후 응시자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시험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험실에 입실
-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0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
 - * 각 시험실에서 중도퇴실 및 시험을 종료한 응시자는 해당시험실 재입실 불가



<의사실기시험 시험방법>

시험시간표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배정된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실기시험센터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응시인원(하루 기준)	사이클(Cycle)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월요일	60명	2	추후 공고	추후 공고
		3		
화요일 ~ 금요일	90명	1	추후 공고	추후 공고
		2		
		3		

※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은 응시자가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임.

※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월요일에도 3개의 사이클을 시행할 수 있음.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준비물을 지참하고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가운, 청진기, 펜라이트
-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일자 및 사이클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정해진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까지 입장 완료
- 다만, 응시자대기실에서 응시자 교육 후 각 시험장 이동시간 전까지는 입장을 허용하나, 시험 전 응시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고, **시험장 이동시간 이후 입장은 결시 처리**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가능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불인정)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제시 시 신분증으로 인정)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 장신구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안내 후에도 퇴실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을 “0점” 처리
- 시험 중에는 별도의 메모용지를 제공하지 않음. 다만, 시험실 내에 준비해둔 환자 상담용 메모용지는 각 시험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아울러, 시험실 외부로 가지고 나갈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시간(사이클) 중에는 시험장에서 퇴장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
- 실기시험센터 주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특히 실기시험센터에는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응시동영상(실기시험의 사고 및 화재예방 목적의 촬영 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 * 응시동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 종료 20일 후 폐기함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있습니다.
- 따라서, 문항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하여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은 물론 「의료법」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안내동영상\(링크\)](#)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편의제공대상자 사례집\(링크\)](#)

□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안내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배부물품
의사 국가시험 (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및 멀티미디어 문제* 유형 일부 포함 ※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 자료라 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표현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구성한 문제 ※ 멀티미디어 문제는 '6문제' 출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폰 (멀티미디어 문제풀이 시 사용)

응시자 유의사항

- 필기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컴퓨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을 참고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함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아울러 시험일 1교시 시험에 결시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 불가함.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 불가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
-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불가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함
-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시험실 내 취음, 취식은 불가함

컴퓨터시험(CBT) 유의사항

- 의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으로만 응시할 수 있음
- 컴퓨터시험(CBT)은 답안카드를 작성하지 않음(PC를 보고 답안을 마우스로 클릭함)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PC)를 사용하시기 바람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답안전송 확인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음

- 의사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안내 동영상은 국시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내 ‘시험정보-컴퓨터시험-CBT’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안내동영상\(링크\)](#)

[2023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링크\)](#)

□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향후 시험응시가 3회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 처리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5.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방법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함.

실기시험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 복지부 장관의 고시(2020-121호, 2021.6.16.)에 의함.

필기시험

의사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발표예정일(제88회)

(실기) 2022. 11월 말 예정

(필기) 2023. 1. 18.(수)

합격자 확인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http://www.kuksiwon.or.kr)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전화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6. 면허증 발급

□ 면허발급 절차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면허증 발급



면허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국시원 홈페이지 -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확인

면허신청 제출 서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졸업증명서
- 의사진단서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사진, 성명 변경 시)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면허증 교부 신청서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 불가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면허증 수령 방법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선택

- 방문으로 선택 시 '방문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 후 국시원 별관으로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필참)
- 우편으로 선택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대리인 수령 가능)

- 신청서 출력: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에서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 개인별 제출 서류 일체(면허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면허증 신청 가능)
- 사본 불인정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래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후 방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진단일(발급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본 불인정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 - [전직종]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 제출서류
 - * 사진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 1매(3.5*4.5cm)
 - * 이름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면허증 교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결격사유 조회 서류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의 경우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시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된 경우, 5일 이상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신청
- 외국인의 경우
 -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 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AFFIDAVIT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대만	주한타이페이대표부	성명서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파산선고 사실유무

※ 위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면허신청 방법 안내(링크)

7. 기타

□ 증명서 발급 안내

- 국시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국시원 홈페이지 원본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

이용안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다음 서비스가 제공됨

- 성적 열람(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 전환성적 열람(인턴지원 용)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1999년 상반기 이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는 전화(1544-4244)로 문의

수수료 안내

- 성적 열람: 무료
- 전환성적 열람: 무료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1,000원

신청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서 발급 안내(링크)

□ 답안카드 열람안내

- 답안카드 열람(필기 시험에 한함)은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 가능
 - 답안카드 열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
 - 열람방법: 국시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후 회신을 받은 응시자는 방문 희망일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시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답안카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속하게 답안카드 확인이 가능
 -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직접 본인의 문제지를 지참하여야 하며, 국시원에서는 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음.
- ※ 방문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구의역 1번 출구)

□ 응시확인서 안내

-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으며, 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 **합격자 발표 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담당자 승인 (발급 승인) > 발급 완료(출력 가능)
-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7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합격자 발표 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 신청 > 발급 완료
(출력 가능)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

※ 발급신청과 동시에 완료되어 출력 가능

□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링크)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 의사 국가시험 분석결과(링크)

국시원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지.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국가시험 분석결과] 에서
확인 가능

□ 고객상담센터(1544-4244) 운영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시간 이외에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

8. 자주하는 질문(FAQ)

Q1. 시험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일정은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7월 중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고되는 시행계획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추후공지'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계획의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격
2. 시험일정
 -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 응시수수료
 - 3) 시험일
 - 4) 합격자발표 예정일
 - 5) 필기시험 지역
 - 6) 시험장 공고일
3. 접수방법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6. 실기시험 범위 및 응시자 준비물
7. 합격자 결정방법
8. 응시자 유의사항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11.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사항
12. 컴퓨터시험 안내

단, 시험 장소는 시행지역만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시험장은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Q2.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없지만 시험 중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통하지 않아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처분 대상 물품이 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다기능시계, 카메라펜,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는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안됩니다. 전자기기, 통신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온 경우, 시험시작 전에 시험 진행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를 가방에 넣어서 교실 앞으로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귀마개(이어플러그)도 시험시간 중에는 착용해서는 안 되며, 이외에 시험 관련 자료나 교재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시험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시험장소 공고일은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시험일 30일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홈페이지 상단의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 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직종을 선택하시면 해당 직종의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클릭하면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표 출력 기간에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하거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 응시자는 접수할 때 선택하여 국시원이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시원은 미리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를 각 시험장에 배포하며, 감독관은 이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응시자가 배정된 시험장에만 배포하므로, 응시자의 정보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 이외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Q5.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 ☞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장 선택제’를 1·2급 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필기시험 전 직종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지역만(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선택한 후, 시험장 공고일에 응시지역별 시험장을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시험장 선택기간동안 “응시원서 수정”메뉴에서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소를 국시원에서 임의로 배정하게 됩니다. 시험장이 1개 뿐인 응시지역은 별도로 시험장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시험장 선택기간 경과 후 일괄 배정될 예정입니다.

단,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에는 시험장만 선택·변경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변경할 수 없으니 응시원서 접수 시에 희망하는 응시지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6.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1·2·3급, 1·2급 언어재활사,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 단,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2급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비공개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멀티미디어 시험문제는 비공개

※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멀티미디어 시험문제는 비공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홈페이지-고객소통-이의신청』에서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 간 시험문제지 및 가답안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간 최종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시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 필기시험 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는 시험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시간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제출한 후 소지품은 교실에 둔 채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시험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시험 종료 타종 이후에 입실 가능합니다.

수기형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실에 입실하면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 중일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진행요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을 매개로 시험문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응시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시험실에 입실해야하는 순서에 자리를 비울 경우 시험 진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진행요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한 후 시험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Q8. 시험 중 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험 중 PC, 이어폰 등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특성 상 PC가 멈추거나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거나 즉시 새로운 좌석의 PC로 이동해 드립니다. 이 때, 기존 PC에 저장된 답안정보 등을 모두 새로운 PC에 복원하여, 이전 시험 진행 상태와 동일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교체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보장해드리므로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Q9. 컴퓨터시험(CBT)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컴퓨터시험(CBT)을 사전에 연습해 볼 수 있도록 ‘CBT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PC를 통해 체험 가능한 ‘CBT 튜토리얼’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 CBT 체험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웹기반 튜토리얼 메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Korean Medical Personnel National Examination Board.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로그인', '사이트맵', '대학담당자', '병원담당자', and 'English'. The main navigation bar has '시험정보', '응시원서접수', '면허·자격·증명서', '고객소통', and '국시원 소개'. The breadcrumb trail is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The left sidebar menu includes '직종별 시험정보', '서식모음', '합격자조회', '컴퓨터시험' (highlighted), '- CBT', '- SBT', and '출제자료'.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BT' and features a search bar with 'CBT란?' and '자료실' dropdowns, and a prominent orange 'CBT 체험하기' button. Below this is a section titled 'CBT 튜토리얼이란?' with a 'CBT 체험하기' button. The footer text states: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Q10. 실기시험 시 복장 제한이 있나요?

- ☞ 복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장으로 응시자의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이 드러나면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이 부착된 옷이나 단체 복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Q11.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회차 국가시험은 필기 시험만 응시해도 되나요?

- ☞ 의사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회의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실기시험은 면제되고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의사 국가시험 종합 안내서

2023년도 제87회(필기) 및 2024년도 제88회(실기)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인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1544-4244

www.kuksiwon.or.kr

mw@kuksiwon.or.kr